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
제244회 임시회

검 토 보 고 서

2020. 10. 26. (월)

검 토 안 건	발 의
“염리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”	구청장



복지도시위원회

(전문위원 조광현)

검 토 보 고 서

(보고자 : 전문위원 조광현)

1. 검토안건

- 안건명 : “염리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” 동의안

2. 제출경위

- 제출자 : 마포구청장
- 제출일 : 2020. 10. 12.
- 회부일 : 2020. 10. 13. (의안번호 : 20-140)

3. 제출이유

염리종합사회복지관 신축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전문적·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5조제1항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구하기 위함

4. 주요내용

가. 민간위탁의 목적

- 1) 민간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내실있는 시설 운영으로 지역주민에게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
- 2) 운영과 시설관리의 일원화로 업무의 효율성 증대

나. 민간위탁 내용

1) 위탁운영 시설현황

- 시설명 : 염리종합사회복지관
- 위치 : 마포구 염리동 14-11 일원(염리3구역)
- 시설규모 : 연면적 8047.01㎡, 규모 지하2층, 지상4층
- 주요시설 : 아이돌봄센터, 키움센터, 장애인보호시설, 데이케어센터, 프로그램실, 상담실 등

2) 위탁사무 범위 : 시설관리 및 운영 전반

3) 위탁기간 : (예정)2021.7.1. ~ 2026.6.30(5년)

4) 수탁기관 선정방법 : 공개모집

5) 수탁기관 선정주체 :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(별도구성)

[표1] 위치도



[표2] 건축개요

- 사업기간 : 2016. 7. ~ 2021. 6.
- 총 사업비 : 25,128백만원

구 분		내 용	
용 도		노유자시설, 제1종근린생활시설	
사 업 규 모	대지면적	2,325.20 m^2	건축면적 1,373.54 m^2
	연 면 적	8047.01 m^2	규 모 지하 2층, 지상 4층
	용 적 률	199.83% (법정 200% 이하)	건 폐 율 59.07% (법정 60% 이하)
	조경면적	650.94 m^2 (대지면적의 28%)	/법정 : 15% 이상
	주차대수	총 43대	/법정 : 34대(200 m^2 당 1대)
구 조		철근콘트리트구조, 철골구조	

[표3] 시설현황

층 별	면적(m^2)	용 도	비고
합 계	8,047.01		
4층	1,166.62	식당, 통합사무실, 세미나실, 요리 교실	
3층	1,236.04	사무실, 치매안심센터, 프로그램실, 소강당	
2층	1,186.82	장애인보호시설, 체력단련실, 데이케어센터	
1층	1,056.97	아이돌봄센터, 상담실, 배움터, 키움센터	
B1층	1,537.53	강당, 세미나실, 북카페, 다목적실, 방재실	
B2층	1,863.03	주차장(43대), 전기실, 기계실, 우수, 정화조실	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(사회복지시설의 설치) 및 제34조의2(시설의 통합 설치·운영 등에 관한 특례)
-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(운영의 위탁 등)

나. 소요예산 : 총 1,455백만원

(국비 8, 시비 1,046, 구비 386, 기타 15)

다. 세부추진일정

- 1) 방침수립 : 2020. 10.
- 2) 수탁자 모집공고 및 선정 : 2020. 11. ~ 2021.1.
- 3) 협약체결 : 2021. 2.
- 4) 복지관 개관 : 2021. 6.

6. 검토의견

- 본 동의안은 「지방자치법」 제104조제3항 및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5조제1항에 따라 신축중인 “염리종합사회복지관”의 운영사무를 민간 위탁하기 위해 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한 안건입니다.
- 위탁운영 시설인 “염리종합사회복지관”으로 위탁기간은 시설 개소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, 위탁사무의 범위는 시설의 운영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사무입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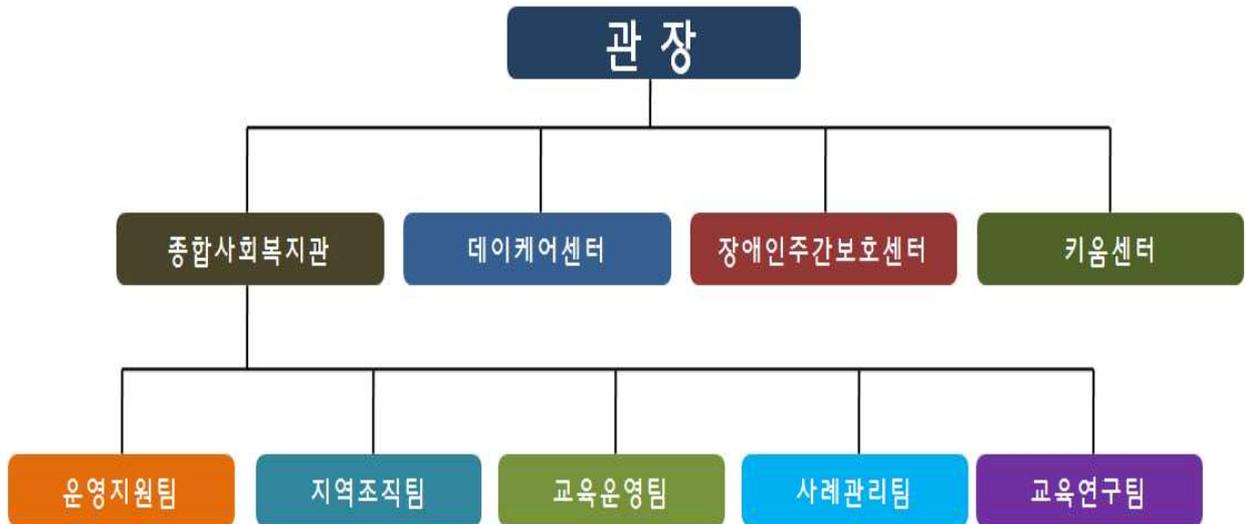
- 위 복지관은 염리3구역내에 연면적 8,047 m^2 약 2,438평 지하2층 지상 4층의 대규모의 시설로서 2021년 6월 준공 되면 내년 7월부터 위탁운영에 들어갈 예정으로 내년도 위탁운영비는 6개월 기준 1,455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.
- 주요 입주예정 시설은 종합사회복지관, 데이케어센터,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및 키움센터 등이고, 공동 이용시설로는 강당, 세미나실, 프로그램 운영 시설, 요리교실, 식당 등으로 배치 할 예정입니다. (별첨1 운영계획)
- 종합복지관이 완공되면 유아, 아동부터 어르신, 장애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에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 복지 허브로써 우리 구민에게 One-Stop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일일평균 약 760명이 복지 혜택을 누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,
- 관련 부서에서는 250억원이 넘는 막대한 건축비를 투입하여 건립한 대규모 종합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입주 시설간의 상호 시너지 효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관계전문가와 협의하고, 예산 낭비요인은 없는지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
첨부 1. 위탁시설 운영계획

2. 관계법규

위탁시설 운영계획

- 운영형태 : 복지시설 통합위탁(치매안심센터 제외)
- 위탁기간 : 2021. 7. 1. ~ 2026. 6. 30.(5년)
- 위탁시설
 - 염리종합사회복지관, 데이케어센터, 장애인주간보호센터, 키움센터
- 사업비 : 1,455백만원(6개월)
- 운영조직



구분	인원
계	37
관장	1
종합사회복지관	18
데이케어센터	10
장애인주간보호센터	5
키움센터	3

※ 개별 센터 조직(안)은 별도 수립(경로식당, 체력단련실, 시설관리 별도)

○ 근무인력 : 총49명

	종합사회 복지관	장 애 인 보호시설	데이케어 센 터	키움 센터	경로 식당	체 력 단련실	시설 관리
운영 인력(명)	19	5	10	3	3	2	7

※ 자원봉사자, 강사 등은 별도

○ 이용인원(또는 정원) : 일일평균 약 767명

	종합사회 복지관	장 애 인 보호시설	데이케어 센 터	키움 센터	경로 식당	체 력 단련실	북 카페등
이용 인원(명)	400	12	25	30	200	50	50

○ 연간 운영비(지출) : 2,910,916천원 (단위:천원)

	종합사회 복지관	장 애 인 보호시설	데이케어 센 터	키움 센터	경로 식당	체 력 단련실	시설 관리
계	929,364	300,000	600,000	149,592	286,400	76,000	569,560
국비				16,848			
시비	844,876	270,520	600,000	124,344	252,080		
구비	84,488			8,400	34,320	76,000	569,560
기타		29,480					

※ 기타 : 요양보험

○ 연간 운영비(수입) : 2,930,356천원 (단위:천원)

	종합사회 복지관	장 애 인 보호시설	데이케어 센 터	키움 센터	경로 식당	기타 수익
계	929,364	300,000	601,000	149,592	286,400	664,000
보조금	929,364	270,520		149,592	286,400	
기타		29,480	600,000			
운영수익 등			1,000			664,000

- 프로그램 수익(프로그램 수입-강사료) : 607,000천원

- 상담수입 : 19,000천원

- 임대 수입 등 : 39,000천원

[관계법령]

사회복지사업법

[시행 2020. 12. 12] [법률 제15887호, 2018. 12. 11, 일부개정]

제34조(사회복지시설의 설치)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(이하 "시설"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<개정 2011. 8. 4.>

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·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·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. <개정 2011. 8. 4., 2012. 1. 26., 2016. 2. 3., 2017. 10. 24.>

1.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2.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

③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. <신설 2019. 1. 15.>

④ 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·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. <신설 2011. 8. 4., 2019. 1. 15.>

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11. 8. 4., 2012. 1. 26., 2019. 1. 15.>

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·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1. 8. 4., 2012. 1. 26., 2019. 1. 15.>

제34조의2(시설의 통합 설치·운영 등에 관한 특례) ① 이 법 또는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시설을 설치·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지역특성과 시설분포의 실태를 고려하여 이 법 또는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시설을 통합하여 하나의 시설로 설치·운영하거나 하나의 시설에서 둘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을 통합하여 수행할 수 있다.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통합하여 설치·운영하려는 각각의 시설이나 사회복지사업에 관하여 해당 관계 법령에 따라 신고하거나 허가 등을 받아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시설을 통합하여 하나의 시설로 설치·운영하거나 하나의 시설에서 둘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을 통합하여 수행하는 경우 해당 시설에서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배치할 수 있는 시설 및 인력 기준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[시행 2015. 1. 1.] [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979호, 2014. 11. 20., 일부개정]

제5조(운영의 위탁 등)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4조제4항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 관리·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.

<개정 2014. 3. 20.>

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수탁자는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에 필요한 기준 및 방법 등은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다. <개정 2014. 3. 20.>

④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(이하 “선정위원회”라 한다)는 수탁자 선정 시 마다 구성하며,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으며,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심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 3. 20.>

⑤ 시설의 위탁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,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다만,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에 한하여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. 수탁자가 해당 시설을 재위탁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6개월 이전에 재위탁을 신청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 3. 20.>